

엑셀 데이터 변환 문서

총 2개 시트

목차

1. Sheet1
2. 주식

Sheet1

총 20개 행, 11개 열의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구분	요일	기준액(백만원)	급자관급자제 미포함	급자관급자제 포함	요일7	최소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_특이사항	url
5억 미만	건축공사	3.11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미만	토목공사	3.15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미만	조경공사	2.47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미만	증장비공사	2.07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2.07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 50억 미만	건축공사	2.58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 50억 미만	토목공사	2.53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억 ~ 50억 미만	조경공사	2.34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의 0.1%	0	0	0	0	0	0	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이상 또는 토목 1,000억 이상)	조경공사	2.06	(직접노+도급자단위) 총금액상 10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율B=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2024.5.8. (24.49%)	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이상 또는 토목 1,000억 이상)	중장비공사	1.84	(직접노+도급자단위) 총금액상 10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율B=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량, 합계금액이 100%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행하는 공사 2.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철거·해체공사 3.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 시설공사, 배관공사, 플랜트설비공사, 기타 산업설비공사 등 기계설비의 시공·설치공사	2024.5.8. (24.49%)	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이상 또는 토목 1,000억 이상)	특수건설공사	1.78	(직접노+도급자단위) 총금액상 10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율B=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량, 합계금액이 100%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행하는 공사 2.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으며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_1 조경공사, 지붕공사, 기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 2_2 건축물의 외벽청소, 방수공사, 내화벽철공사 등 2_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2024.5.8. (24.49%)	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

주석

총 18개 행, 1개 열의 데이터입니다.

요율A=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요율B=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요율B=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다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토목시설물의 시공을 목적으로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다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1. 차량, 기계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행하는 공사 2.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철거·해체공사 3.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시설공사, 배관공사, 플랜트설비공사, 기타 산업설비공사 등 기계설비의 시공·설치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차량, 기계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행하는 공사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철거 해체공사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시설공사, 배관공사, 플랜트설비공사, 기타 산업설비공사 등 기계설비의 시공·설치공사
[특수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 시행규칙(별표 3)에 구분된 조경공사 2.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으며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_1 조경공사, 지붕공사, 기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 2_2 건축물의 외벽청소, 방수공사, 내화뿔칠공사 등 2_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 시행규칙(별표 3)에 구분된 조경공사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으며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조경공사, 지붕공사, 기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
건축물의 외벽청소, 방수공사, 내화뿔칠공사 등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